양양군 고시 제2016 - 95호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

-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『낚시 관리 및 육성법』 (이하 "법" 이라 한다)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 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어선업자·선원(이하"어선업자"라 한다)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낚시어선의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영업시간) 낚시어선업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.
- 제4조(영업구역)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.
- 제5조(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)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, 해사안전법, 어촌·어항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.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갯바위, 간출암, 무인도서 등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한다.
- 3.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4. 충돌,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, 인명 구조 활동 등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5.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 · 유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6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.
- 제6조(낚시어선승객 준수사항) 낚시어선의 승객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출항 시부터 입항 할 때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 - 2. 낚시어선업자가 요구하는 "승선자 명부" 작성 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낚시어선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3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4. 선장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.
 - 5. 수산물의 불법 포획·채취 행위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방류한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한다.

- 6. 해상에 유류, 분뇨,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.
- 7. 낚시어선에서 음주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금한다.
- 8.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.
- 제7조(기타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에 제6조에 의한 승객의 준수사항 및 선장의 지도·요구사항을 따라야 함을 교육시켜야 한다.
 -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·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 시장·군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제1조에 의한 고시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 고시 제2013-130호(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변경 고시)는 폐지한다.